정부초청 외국인장학생 운영 규정(3-7-8)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국제교육원 운영규정 제6장에 의한 건양대학교 정부초청 외국인장학생(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의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학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과 건전한 면학과 유학생활의 내실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목적 및 목표) ①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갖추어 한국어의 세계화를 선도할 전문 인력을 육성하는 것을 교육목적으로 한다.

②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01.26.)

1.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 능력 함양
2. 대학 수학을 위한 한국어 능력 함양
3. 한국사회 및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와 적응력 함양
4. 탁월한 한국어 구사능력을 바탕으로 직무 수행에 능통한 한국어 전문가 양성
5. (삭제 2017.01.26.)

제3조(한국어연수과정 이수) ① 장학생은 학위과정 입학 전에 1년의 한국어연수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한국어연수과정은 연 4학기(40주)로 운영한다.(개정 2011.03.01., 2017.01.26.)

③ 한 학기의 수업기간은 10주로 한다.(개정 2017.01.26.)

④ (개정 2011.03.01.)(삭제 2017.01.26.)

⑤ 한국어연수과정을 이수한 장학생은 과정 이수 후,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에 도달하여야 한다.(개정 2011.03.01.)

제4조(분반편성) ① 분반 시험을 실시하며, 한국어 능력에 따라 반을 배치한다.

② 개강 후 1주일 이내 분반 변경이 가능하다.

제5조(현장학습)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매 학기 2회 이상의 현장학습을 실시한다.

제6조(출석) 지각 또는 조퇴 3회는 결석 1회로 처리한다.(개정 2017.01.26.)

제7조(한국어연수과정 이수 면제) 장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TOPIK) 5급 이상을 소지한 경우, 한국어연수과정 이수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1. 3. 1)

제8조 (한국어연수과정 이수기간 연장) ① 제3조 5항을 충족하지 못한 장학생 중 TOPIK 3급 합격점(120점)의 70%(84점) 이상을 받고 한국어연수기관장의 입학 허가를 받은 사람은 국립국제교육원장의 승인을 얻어 한국어 연수과정 이수 기간을 1회에 한해 6개월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1.03.01., 2017.01.26.)

② 제1항의 장학생은 국립국제교육원 장학금 지급 세부지침에 따라 어학 연수비의 5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신설 2017.01.26.)

제9조(공결) 한국어연수과정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결석하고자 하는 장학생은 사전에 국제교육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에 진단서 등의 증빙 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01.26.)

제10조(학위과정 입학 지원) 장학생은 국립국제교육원의 지침에 따라 학위과정에 입학 지원하며, 국제교육원은 그 결과를 국립국제교육원장에게 보고한다.(개정 2017.01.26.)

제11조 (삭제 2017.01.26.)

제12조(등록 및 등록금 납부) ① 장학생은 매 학기 개강 전 건양대학교 학사일정에 따라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등록금 납부는 국제교육원에서 처리한다.

② 입학금은 면제한다.

제13조(기숙사) 장학생은 기숙사에 입실하여야 한다.(개정 2017.01.26.)

제14조(수학 상황 보고) 매학기 종료 후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장학생의 수학 상황을 국립국제교육원장에게 보고한다.

1. 한국어연수과정 장학생 : 성적 및 수료상황
2. 학위과정 장학생 : 성적 및 학위취득, 수료 상황

제15조(휴학 신청) ① 질병, 가정 사정, 본국 정부의 일시소환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증빙서류를 갖추어 건양대학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진단서 사본 1부(질병휴학의 경우에 한함)
2. 휴학신청서 1부
3. 휴학허가서 및 지도교수의견서 각 1부

② 장학생의 휴학 처리 결과를 즉시 국립국제교육원장에게 보고 한다.

제16조(휴학기간) 휴학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천재지변, 질병 등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대 1년의 범위 안에서 총장의 승인을 받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복학 및 신고) ① 복학을 하고자 하는 장학생은 휴학기간 종료 1개월 전에 학칙에 따라 복학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장학생의 복학 처리 결과를 즉시 국립국제교육원장에게 보고한다.

제18조(일시출국 신고) 장학생은 일시출국 10일전까지 일시출국신고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9조(일시출국기간) ① 학위과정의 일시출국기간은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1회 60일, 연간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7.01.26.)
② 일시출국에 대한 장학금 지급은 제29조 제1항과 제3항에 의한다.(개정 2017.01.26.)
③ 한국어연수 기간 중에는 일시출국을 불허한다. 다만, 방학기간 중에는 국제교육원장의 허가를 받아 방학기간 범위 내에서 최대 4주 이내로 일시출국 할 수 있다. 단, 개인질병 치료, 부모사망 등 특별한 경우에는 학기 중에라도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국제교육원장의 허가를 받아 2주 이내로 일시출국 할 수 있다.
④ 일시출국 신청서는 일시출국 10일 전까지 제출하여 국제교육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신설 2017.01.26.)

제20조(재입국 신고) 일시출국기간이 종료되어 재입국한 장학생은 재입국 후 3일 이내에 여권사본 1부를 갖추어 재입국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1조 ① (논문작성) 학위논문은 원칙적으로 한국어로 작성하되, 대학 및 전공분야의 필요에 따라 부득이 외국어로 작성한 경우에는 한국어 요약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논문인쇄비 청구) 석·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 통합과정을 수료하고 학위논문 인쇄한자는 귀국 신고 시에 국립국제교육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학위논문 또는 연구논문의 인쇄비를 소정의 한도 내에서 청구할 수 있다.
1. 학위 논문 1부
2. 논문제출 확인서 1부
3. 학위논문 인쇄비 청구서 1부
4. 인쇄비 세금계산서 1부

제22조(귀국 신고) ① 장학기간이 종료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 포기하고 귀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하며, 장학기간 종료 또는 귀국 30일 전까지 국립국제교육원장에게 보고한다.
1. 귀국 신고서 1부
2. 지도교수 의견서 1부
② 학위과정자가 장학기간 이내에 학위를 취득하지 못하여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한국 내에 체류할 경우, 석사는 12개월까지, 박사는 18개월까지 귀국신고를 연기할 수 있으며,

장학기간 종료 30일 전까지 장학생의 귀국 신고 연기 상황을 국립국제교육원장에게 보고한다.

제23조(주소지 또는 연락처 변경 신고) 장학생이 주소지 또는 연락처를 변경하였을 경우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제교육원은 그 사실을 국립국제교육원에 보고한다.(개정 2017.01.26.)

제24조(장학기간) ① 장학생의 장학기간은 1년의 한국어연수과정 외에 학부과정은 4년, 석사과정은 2년, 박사과정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11.03.01., 2017.01.26.)
② 제1항의 장학기간에 휴학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5조(장학기간 연장) 장학기간은 석사과정은 6개월 1회, 박사과정은 1년의 범위 안에서 6개월 단위로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1.03.01)

제26조 (삭제 2017.01.26.)

제27조 (삭제 2017.01.26.)

제28조(생활비 및 연구비 지급) ① 생활비는 매월 초에 지급하며, 장학생의 군내체제 및 수학 여부 등을 확인하고, 관련서류를 비치한다.
② 연구비는 석·박사 학위과정생에게 매 학기 초에 지급하며, 이 때 장학생은 이수 학점 취득 시까지는 수학계획서를 이수 학점 취득 후부터는 논문작성세부계획서를 국제교육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생활비 및 연구비 지급 일시 중단) ① 학위과정생 중 일시 출국일수가(방학포함) 학기당 1회에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생활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03.01., 2017.01.26.)
② 휴학기간에는 생활비 및 연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한국어연수과정을 이수중인 자가 일시 출국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간만큼 생활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01.26.)

제30조(장학생 자격 상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장학생은 자격을 상실하고 장학금 지급을 중단한다.(개정 2017.01.26.)
1. 장학생 지원 관계서류 및 기타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을 경우
2.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정치활동을 한 경우
3. 국립국제교육원에 서약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국립국제교육원이 정한 학사행정 지초사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무단 수학 중단으로 수강 신청한 학점의 2/3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6. 휴학기간 종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복학원서를 1개월 이내에 복학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7. 중도 포기한 경우
8. (삭제 2017.01.26.)
9. 외국대학과의 학점교류 등의 목적(교환학생 등)으로 출신국 또는 제3국에 출국한 경우
10. 제31조의 1~3호에 의거, 경고 3회 이상 받은 경우
11. 제3조에 의한 한국어연수 후 TOPIK 3급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단, 한국어 연수 과정 1년 후 TOPIK 3급 합격점(120점)의 70%(84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사람으로 수학대학에서 진학을 허용한 사람, 제8조 한국어 연수기간 이수기간 연장을 승인받은 사람 또는 제8조 한국어 추가 연수자로 추가 연수 후에 TOPIK 3급 이상을 취득한 사람은 예외로 한다.
12. (삭제 2017.01.26.)
13. (삭제 2017.01.26.)

제31조(경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립국제교육원장에 보고, 해당 장학생에게 경고 처분한다.(개정 2011.03.01., 2017.01.26.)

1. 한국어연수기간 중 무단결석일이 연속하여 3일 이상 또는 월 누계5일을 초과할 경우
2. 신고 또는 허가 없이 무단으로 일시 출국하거나, 허가기간 내 통보 없이 입국하지 않는 경우
3. 학기 단위로 학부과정의 평점평균(환산점수)가 70/100 미만인 경우, 대학원과정의 평점 평균(환산점수)가 80/100미만인 경우
4. 제3조에 의한 한국어 연수 후 TOPIK 3급에 미도달한 경우
5. (삭제 2017.01.26.)

제32조(담임교사) 장학생의 학업 및 대학생활을 돕기 위하여 담임교사를 둔다.

제33조(도우미 운영) 한국어 학습과 대학 생활 지원을 위하여 도우미 제도를 운영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